

2026. 4.

국가 연방항소법원,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종결권의 효력이 미국 국경 밖에도 미친다고 판단

변호사
김혜성

1. 개요

2026년 1월 12일, 제5 연방항소법원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및 종결권 행사의 효력이 미국 국경 밖에도 미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및 종결권 행사의 효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¹⁾ 이 사건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및 종결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에 대해 판단한 최초의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2. 사실 관계

1) Double Shot의 작곡 및 저작권의 이전

Vetter와 Smith는 1962년 여름 Double Shot이라는 곡을 작곡하였고 다음해인 1963년 Double Shot에 대한 저작권 전부를 단 1달러에 Windsong Music Publishers(이하 “Windsong”)에 이전하였는데, 이 이전 계약에는 1909년 저작권법에 따른 갱신 기간 동안의 모든 권리들의 조건부 이전을 포함하여 저작권이 보호되는 전 기간 동안 Double Shot에 대한 전 세계에서의 배타적인 권리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Double Shot이 발표되고 전국적으로 방송을 타게 되자 Windsong 1966년에 미국 저작권청에 Double Shot의 저작권 등록을 하였고, 이 저작권 등록으로 Windsong은 1909년 저작권법에 따라 최초 28년 및 추가 갱신되는 28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Smith가 1972년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이후, 그의 상속인들과 Vetter는 Double Shot의 최초 저작권 보호기간이 1994년에 종료하자 저작권 보호기간을 갱신했다. 갱신되는 보호기간 동안의 저작권은 Vetter와 Smith가 해당 기간 동안 생존해 있는 것을 조건으로 1963년에 체결된 저작권 이전 계약에 따라 Windsong에게 이전된 것이었는데, Smith는 갱신되는 보호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갱신된 보호기간 동안은 Windsong이 Vetter로부터 이전 받은 50%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Smith의 상속인들이 나머지 50%의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다.

1) 5th Cir., Vetter v. Resnik, No. 25-30108

이후 1996년에 Vetter Communications Corporation은 Smith의 상속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보호기간이 갱신된 저작권을 매수하였고 같은 해 Windsong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갱신된 저작권의 50%를 Lyresong Music, Inc.(이하 “Lyresong”)에 이전했다.²⁾

3) 종결권 통지

2019년 3월, Vetter는 1963년 체결한 저작권 이전 계약에 따라 Vetter가 Windsong에게 이전한 모든 권리들의 이전을 2022년 5월 3일 종결한다는 내용의 저작권법 제304조 (c)에 따른 종결 통지를 Windsong과 Lyresong에게 하였고, 2019년 8월 Windsong은 Vetter에게 회사가 Resnik Music Group(이하 “Resnik”)에 팔렸다는 통지를 했다.

4) 종결권 통지 이후의 상황

2022년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이하 “ABC”)는 Vetter와 Vetter Communications Corporation(이하 이 둘을 “Vetter 측”으로 통칭)에게 Double Shot을 전세계에서 방송되는 디지털 방송 및 온디맨드 스트리밍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용허락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Vetter 측은 ABC에 자신들이 전세계적으로 Double Shot에 대한 유일하고 배타적인 저작권자라고 하였으나, Resnik은 Vetter의 종결권 이후에도 Double Shot의 저작권 25%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했다.

5) 연방지방법원의 판단

Vetter 측은 자신들이 Double Shot의 배타적인 저작권자이며 미국 및 해외에서 Double Shot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루이지아나중부 연방지방법원(Middle District of Louisiana)에 소를 제기하였고, 연방지방법원은 Vetter 측이 전 세계적으로 Double Shot의 유일한 저작권자라고 판단했다.

3. 관련 법 조항

미국 저작권법 제304조 (c)은 1978년 1월 1일 현재 최초의 저작권 보호기간 또는 갱신된 보호기간 중에 있는 저작권의 경우 1978년 1월 1일 이전에 행해진 저작권 이전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304조 (c)에 따르면, 저작물의 저작자 1인 이상이 저작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이전한 저작자 또는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종결권한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상속인이 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즉, Vetter Communications Corporation이 50%, Windsong이 25%, Lyresong이 25%를 보유하게 됨.

4. 제5 연방항소법원의 판단

1) 연방지방법원이 법의 문언 및 목적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인지 여부

1909년 저작권에 따르면 저작권은 최초 보호기간 및 갱신된 보호기간 동안 보호될 수 있는데, 28년 동안의 최초 보호기간의 종료 시 저작자는 추가적으로 28년 동안 저작권 보호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그리고 갱신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저작자가 생전에 제3자에게 갱신할 권리를 이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의 상속인이 갱신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³⁾

Resnik은 미국만이 1909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 갱신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1909년 저작권법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은 미국에서의 저작권 보호기간 갱신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하여 해석한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은 1909년 저작권법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은 1909년 저작권법 갱신 조항의 문언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즉, 갱신 조항에는 갱신할 권리가 미치는 지리적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조항의 문언 자체가 불명확하지도 않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조항은 처음에는 협상력이 부족한 위치에 있었던 저작자로 하여금 저작물의 가치가 검증된 이후에 저작권 이전의 조건들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저작자가 갱신 기간 도래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가족에게 ‘새로운 재산’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한 바 있다. Double Shot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가 단지 미국 내에서 가 아닌 전 세계에서 회복되어야만 1909년 저작권법의 목적과 조화되는 공정한 보상이 가능하므로, 연방지방법원으로 판단은 법의 문언 및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

2)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이 기존 판례와 모순되는지 여부

Resnik은 Smith의 상속인들은 Stewart 판결⁴⁾에 따라 저작권의 갱신된 보호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만 저작권을 가질 수 있을 뿐임에도 연방지방법원이 Smith의 상속인들이 저작권의 갱신된 보호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한 것은 Stewart 판례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등 기존 판례와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1909년 저작권법 갱신 조항의 지리적 범위에 대한 판례들이 충분하지 않기는 하나, Stewart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2차적 저작물과 관련 유사한 사실 관계에 대해 판결한다. 비록 Stewart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갱신할 권리의 지리적 범위에 대해 논하지는 않았으나 갱신할 권리의 이전은 갱신된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이전임은 명확히 언급하면서도 그 권리가 미

3)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에 대한 규정인 1909년 저작권법 제24조는 저작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등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갱신하여 추가적으로 28년 연장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

4) Stewewart v. Abend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갱신 기간의 도래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가 이전에 그의 갱신할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의 유언집행자(executor)가 갱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함.

국 내에서의 권리인지 또는 해외에서의 권리인지는 구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연방지방법원이 Vetter 측이 전 세계적으로 Double Shot의 유일한 저작권자라고 판단한 것은 기존 판례와 모순되지 아니한다.

3)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이 국제 조약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Resnik은 연방지방법원의 판단이 속지주의 원칙 및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갱신 조항은 본질적으로 비지리적(non-geographical)이라는 Vetter 측의 주장이 갱신 조항의 법 문언 및 목적에 보다 부합한다.

5. 시사점

제5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및 종결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에 대하여 최초로 판단을 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작곡가들은 이 판결이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승리라고 평가한다. 다른 연방항소법원들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후 연방대법원에 의한 최종적인 판단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의 갱신 및 종결권 행사의 효력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가 명확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 자료

- Vetter v. Resnik (5th Cir., 12. Jan. 2026)
- <https://www.reedsmith.com/articles/termination-beyond-us-borders-what-vetter-v-resnik-means-for-authors-and-rightsholders/>
- <https://completemusicupdate.com/songwriter-groups-hail-unequivocal-win-for-creator-rights-as-us-appeals-court-upholds-landmark-termination-rights-ruling/>